

**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
환경영향평가**

**[평가항목 · 범위 등의 결정내용]**

2017. 11



국토교통부

## 제 1 장 사업의 개요

### 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-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성장동력 산업과 첨단산업 등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'14.12.17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주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결정하였음
- 본 사업을 통해 탄소산업을 국가거점사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산업,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하며 탄소원천소재 개발과 이를 이용한 탄소복합부품 개발, 탄소기술연구소 등 각종 R&D 생산체계 구축 등 향후 탄소산업을 집적화하는 “탄소소재 전문화 단지”를 조성함
- 탄소산업의 중심지인 전주시 내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미래시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 기반 마련하고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도시공간의 균형발전 도모하며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지 등을 확충하여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

### 1.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사업은 “환경영향평가법”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관련 [별표3]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며,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<표 1.2-1>와 같음

<표 1.2-1>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,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

구 분	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	협의요청시기
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	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본 사업 검토	- 산업단지 : 655,993㎡	

자료 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관련 [별표3]

- 본 사업은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사업으로, 본 법에 따라 인·허가 절차를 수행할 예정임

### 1.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#### 가. 추진경위

- 2014.03.12. :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(맞춤형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)
- 2014.03. ~ 12. :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(사업규모 조정, 지자체 지원 등)
- 2014.12.17. :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(전주탄소섬유 우선추진 결정)
- 2016.10. : 예비타당성조사 검토
- 2017.03.16. :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통보(기재부→LH)

#### 나. 향후계획

- 2017.09. :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
- 2016.10. :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
- 2017.11. :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14일간)
- 2017.12. :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제출
- 2018.01. :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·공고 및 주민설명회
- 2018.02. :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
- 2018.03. :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제출 및 협의요청
- 2018.04. :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제출 및 협의완료
- 2018.05. :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

### 1.4 사업의 내용

- 사업명 :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
- 위치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, 고량동 일원
- 면적 : 655,993m<sup>2</sup>
- 사업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- 승인기관 : 국토교통부
- 사업기간 : 2018 ~ 2022년
- 사업비 : 2,300억원

### 1.5 토지이용계획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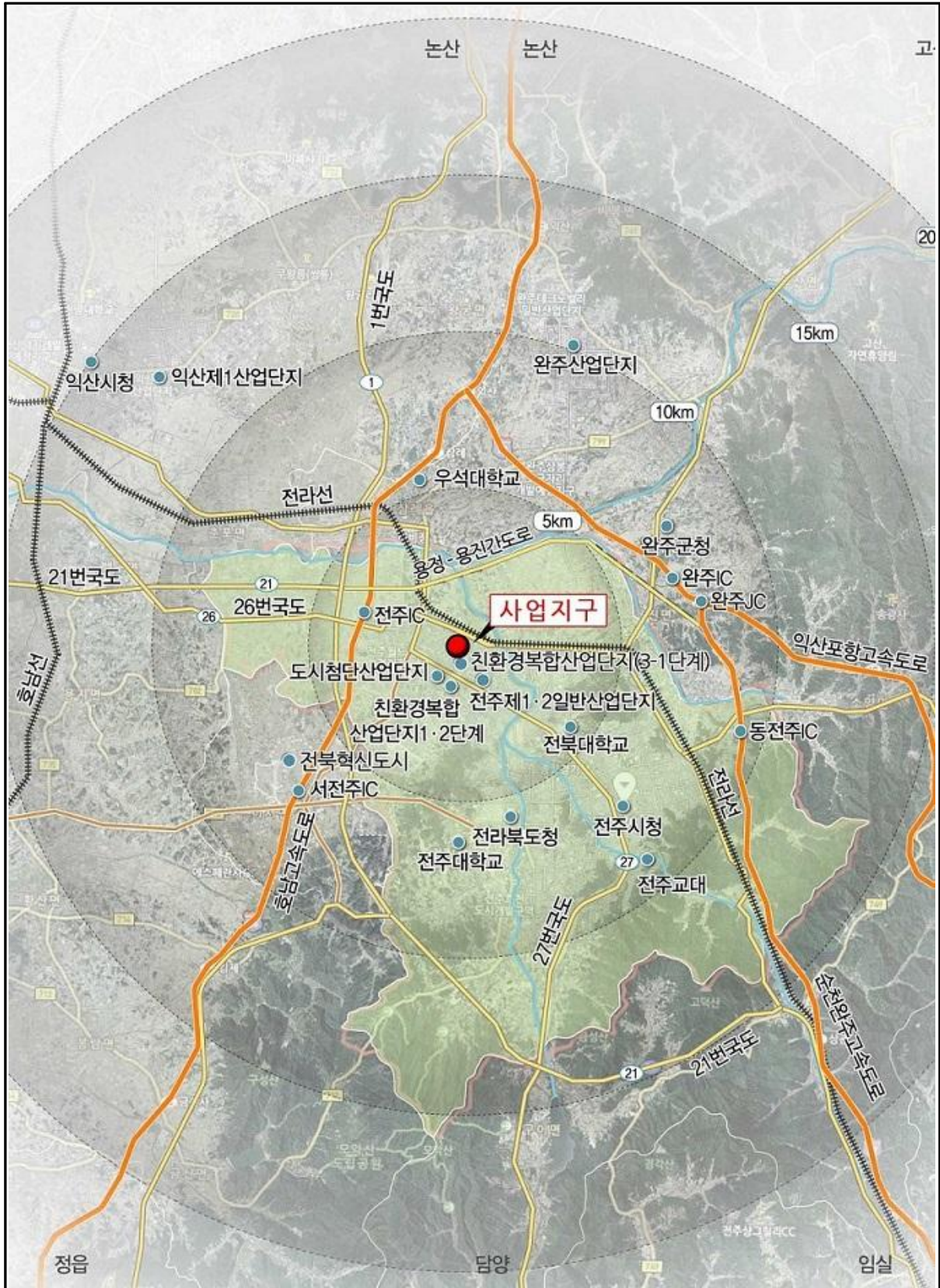
-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

<표 1.5-1> 토지이용계획(안)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구성비(%)	비고	
합계	655,993	100.0		
산업시설 용지	소계	446,086	68.0	
	산업용지	437,522	66.7	
	R&D	8,564	1.3	
주택용지	단독주택용지	12,272	1.9	이주주택지
상업시설용지		15,862	2.4	
지원시설용지		2,384	0.4	
공공시설 용지	소계	179,389	27.3	
	일반도로	104,164	15.9	도로율 16.2%
	보행자도로	2,337	0.3	
	공원	18,211	2.8	
	녹지	21,595	3.3	공원·녹지율 6.8%
	공공공지	4,575	0.7	
	주차장	700	0.1	
	저류지	6,477	1.0	
	오폐수처리시설	3,940	0.6	



(그림 1-1) 토지이용계획도(안)



(그림 1-2) 사업지구 위치도

##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### 2.1 대상지역 설정

- 본 사업 시행으로 계획의 적정성 및 자연생태환경, 대기환경, 수환경, 토지환경, 생활환경, 사회·경제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·분석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, 이를 각 항목별로 제시하였음

<표 2.1-1>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

항 목	구 분	평 가 대 상 범 위		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(사유)
		공간적 범위	시간적 범위	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-	○탄소소재 산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
	대안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○사업지구	-	○계획의 비교, 입지, 수요측면에서의 대안 비교·검토
자연 생태 환경	동·식물상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.0km	공사시 및 운영시	○사업시행으로 인해 동·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지구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1km이내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자연환경 자산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 및 운영시	○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대기 환경	기 상	○전주기상대	2007~2016년	○주변 기상대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, 악취, 건강영향대상물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함
	대기질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.0km	공사시 및 운영시	○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, 2013.1.1., 환경부」를 참고하여 산업단지 사업의 평가범위 설정 기준인 2km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악취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.0km	운영시	○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, 2013.1.1., 환경부」를 참고하여 산업단지 사업의 평가범위 설정 기준인 2km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온실가스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 및 운영시	○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, 이동차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이 예상되므로 사업지구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
<표 2.1-1 계속>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

항 목		구 분		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(사유)
		평 가 대 상 범 위		
		공간적 범위	시간적 범위	
수 환경	수 질	○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(전주천, 조춘천)	공사시 및 운영시	○ 부지조성 공사중 강우시 토사 유입과 운영시 발생 오수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수리수문	○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(전주천, 조춘천)	공사시 및 운영시	○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 수계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토지 환경	토지이용	○ 사업지구	운영시	○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지구를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토 양	○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 및 운영시	○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및 지장물 철거, 운영시 주유소 운영에 따른 토양 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지형·지질	○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	○ 공사시 절·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생활 환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 및 운영시	○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소음·진동	○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5km	공사시 및 운영시	○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따라 인근 지역에 소음·진동 영향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장비투입대수에 따른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참조하여 0.5km 이내 지역을 공사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○ 운영시 이동차량 의해 지구내 정운시설에 도로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 사업지구를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위락·경관	○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운영시	○ 「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」과 사업지구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가 조망 가능한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위생 및 공중보건	○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.0km	운영시	○ 운영시 대기질 평가범위 설정 기준인 3.0km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사회 경제 환경	인구·주거	○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 및 운영시	○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	산업	○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 및 운영시	○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

## 제 3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### 3.1 환경영향평가항목의 선정

-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「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6-22호), 2016.1.21., 환경부」, 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, 2013.1.1., 환경부」에 준하여 설정하였음
-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, 대안설정·분석의 적정성, 동·식물상, 대기질, 온실가스, 악취, 수질, 토지이용, 토양, 지형·지질, 친환경적자원순환, 소음·진동, 위락·경관, 위생·공중보건, 주거, 산업 등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
- 자연환경자산, 기상, 수리·수문, 위락, 인구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
- 해양환경, 전파장해, 일조장해 등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항목으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

<표 3.1-1>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

구분		평가항목			선정(미포함) 사유
		중점	일반	제외	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○	-	-	○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므로 탄소소재산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
	대안설정·분석 의 적정성	○	-	-	○ 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대안 비교·검토
자연 생태 환경	동·식물상	○	-	-	○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·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
	자연환경 자 산	-	○	-	○ 사업시행시 사업지구 주변에 분포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발생
대기 환경	기 상	-	○	-	○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
	대 기 질	○	-	-	○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○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
	온실가스	○	-	-	○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변화
	악 취	○	-	-	○ 운영시 악취물질 발생



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

<표 3.1-1 계속>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

구분		평가항목			선정(미포함) 사유
		중점	일반	제외	
수환경	수 질	○	-	-	○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, 인부로부터 오수 발생 ○운영시 오·폐수 발생 및 비점오염 발생
	수리·수문	-	○	-	○부지조성에 따른 수리·수문의 변화과악
	해양환경	-	-	○	○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없음
토지 환경	토지이용	○	-	-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를 파악
	토 양	○	-	-	○사업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○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요인 파악
	지형·지질	○	-	-	○절·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 ○사토(버럭)처리 계획 수립
생활 환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	-	-	○공사시 장비 및 인력투입으로 폐기물 발생 ○각종 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
	소음·진동	○	-	-	○공사시 장비 운행에 따른 소음·진동 발생
	위락·경관	○	-	-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위락·경관요소 파악 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·경관변화
	위생·공중 보건	○	-	-	○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에 대해 검토
	전파장해	-	-	○	○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, 사업지역 주변으로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은 위치하지 않음
	일조장해	-	-	○	○단독주택에 의한 주변지역 일조장해 영향
사회 경제 환경	인 구	-	○	-	○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변화
	주 거	○	-	-	○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변화
	산 업	○	-	-	○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산업변화

### 3.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(조사·예측 등)

-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평가항목별 조사, 예측방법은 <표 3.2-2>과 같음
- 조사는 기존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
- 예측은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온시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
-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

<표 3.2-2> 평가 항목별 조사·예측 방법

평가항목	조사내용 및 범위	영향예측 방법
동·식물상	① 조사내용 : 육상 및 육수생태계 현황 - 식물상 및 식생 현황, 포유류, 조류, 양서류, 파충류, 육상곤충류,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, 어류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, 수계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(2회) ④ 조사지점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- 사업시행으로 주변 동·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-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여부 예측 - 공사시 및 운영시 주요 서식종의 변화, 서식지 훼손 및 이동로 단절 영향
자연환경 자산	① 조사내용 : 자연환경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-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분석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
기상	① 조사내용 : 사업지구의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: 전주기상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조사	- 기상자료 조사 및 통계분석
대기질	① 조사내용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도 - PM-10, PM-2.5, SO <sub>2</sub> , NO <sub>2</sub> , CO, O <sub>3</sub> , Pb, 벤젠(8개 항목)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(2회) ④ 조사지점 : 9개소(3일 연속)	- 공사시 토공사 및 장비가동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대기확산모델링 수행을 통해 영향 예측 - 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운행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대기확산모델링 수행을 통해 영향 예측
악취	① 조사내용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악취유발 시설 현황 - 복합악취, 지정악취물질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(2회) ④ 조사지점 : 3개소	- 운영시 산업시설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악취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대기확산모델링 수행을 통해 영향 예측

**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**

**<표 3.2-2 계속>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**

평가항목	조사내용 및 범위	영향예측 방법
온실가스	① 조사내용 :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- 공사장비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원의 원단위, 배출계수 및 유사사례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
수질 (지표·지하)	① 조사내용 : 지표수,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 - 지표수질 : pH, BOD, SS, DO, 총대장균군, Cd, As, CN, Hg, 유기인, Pb, Cr <sup>6+</sup> , PCB, ABS, COD, T-P(16개 항목) - 지하수질 :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Pb, Hg, As, Cr <sup>6+</sup> , NH <sub>3</sub> -N, NO <sub>2</sub> -N, Cd, Al, 페놀, KMnO <sub>4</sub> 소비량, 총경도, 맛, 냄새, Cu, 색도, pH, Zn, 염소이온, 증발잔류물, Fe, Mn, 탁도, 황산이온(25개 항목)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인근 수계 ③ 조사방법 :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(2회) ④ 조사지점 : 지표수질 8개소, 지하수질 2개소	- 주변 수질현황 분석 -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-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산정 - 운영시 계획인구에 대한 발생원단위를 이용한 오수 발생량 예측 - 운영시 산업시설에 의한 폐수 발생 산정 - 운영시 지목변경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예측
수리·수문	① 조사내용 : 하천 및 유역현황, 수자원 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인근 수계 ③ 조사방법 :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	- 사업시행 전·후의 수리·수문 변화 - 토사 및 우수유출 영향 및 원단위법을 이용한 우수발생량을 예측
토지이용	① 조사내용 : 용도별,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-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, 토지이용계획, 시설물 배치계획,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, 공원녹지 계획 등 검토
토양	① 조사내용 : 토양현황(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) - Cd, Cu, As, Hg, Pb, Cr <sup>6+</sup> , Zn, Ni, F, 유기인화합물, PCB, CN, 페놀, 트리클로로에틸렌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BTEX, 석유계통탄화수소(TPH), 벤조피렌(18개 항목)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(2회) ④ 조사지점 : 3개소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현황과악
지형·지질	① 조사내용 : 지형형상, 지질상황, 토질성상, 사면안정성, 연약지반 분포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- 공사시 토공량계획 산출 - 토공사로 인한 지형변화, 사면발생, 사면안정성, 연약지반분포여부 등 검토
친환경적 자원순환	① 조사내용 :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	-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원단위산출로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- 원단위 자료에 근거하여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

<표 3.2-2 계속>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

평가항목	조사내용 및 범위	영향예측 방법
소음·진동	① 조사내용 :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현지조사(2회) ④ 조사지점 : 생활 및 도로소음 5개소	- 공사시 공사장비별 발생 소음·진동도를 바탕으로 거리감쇠에 따른 소음·진동 예측(국립환경과학원식 등) -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교통소음예측식에 의한 소음·진동 예측(국립환경과학원식 등)
위락·경관	① 조사내용 : 위락·경관요소 및 훼손예상 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위락·경관요소 조사 -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예측·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요 경관자원의 훼손 및 경관적 부조화 예측 - 주요 경관축 훼손여부 검토 - "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심의지침, 2015. 8, 환경부"에 준하여 영향 예측
위생·공중보건	① 조사내용 : 의료기관, 인력, 법정전염병, 인구 집단분석, 환경취약계층 분포, 사망률 유병률 현황 - 니켈, 카드뮴, 비소, 크롬, 수은, 황화수소, 암모니아, 포름알데히드, 스타이렌, 염화수소, 시안화수소, 염화비닐(12개 항목)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(2회) ④ 조사지점 : 3개소	- 운영시 산업시설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발암성, 발암성물질에 대한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대기확산모델링 수행을 통해 영향 예측
인구	① 조사내용 : 인구 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조사	- 인구 계획에 따라 장래 인구 변화 예측
주거	① 조사내용 : 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조사	- 주거 계획에 따라 장래 주거 변화 예측
산업	① 조사내용 : 산업활동 현황 ② 조사범위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: 문헌조사	- 산업시설 계획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예측

### 3.3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선정

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및 동·식물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
- 항목별 조사항목, 조사지점 수, 조사횟수는 아래표와 같음
- 조사지점은 사업지구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,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

<표 3.3-1> 항목별 조사내용

구분	조사항목	지점수	조사횟수
대기질	○ PM-10, PM-2.5, SO <sub>2</sub> , NO <sub>2</sub> , CO, O <sub>3</sub> , Pb, 벤젠 (8개 항목)	9	2 (3일연속)
약취	○ 복합약취(1개 항목), 지정약취(주변 산단 발생 주요물질)	3	2
수질	지표수 ○ pH, BOD, SS, DO, 총대장균군, Cd, As, CN, Hg, 유기인, Pb, Cr <sup>6+</sup> , PCB, ABS, COD, T-P (16개 항목)	8	2
	지하수 ○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Pb, Hg, As, Cr <sup>6+</sup> , NH <sub>3</sub> -N, NO <sub>2</sub> -N, Cd, Al, 페놀, KMnO <sub>4</sub> 소비량, 총경도, 맛, 냄새, Cu, 색도, pH, Zn, 염소이온, 증발잔류물, Fe, Mn, 탁도, 황산이온 (25개 항목)	2	2
토양	○ Cd, Cu, As, Hg, Pb, Cr <sup>6+</sup> , Zn, Ni, F, 유기인화합물, PCB, CN, 페놀, 트리클로로에틸렌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BTEX, 석유계통탄화수소(TPH), 벤조피렌 (18개 항목)	3	2
소음·진동	○ 소음 : 주간 4회, 야간 2회 ○ 진동 : 주간 2회, 야간 1회	5	2
위생·공중보건	○ 니켈, 카드뮴, 비소, 크롬, 수은, 황화수소, 암모니아, 포름알데히드, 스타이렌, 염화수소, 시안화수소, 염화비닐 (12개 항목)	3	2
생태계	육상 ○ 식물상 및 식생 ○ 양서·파충류 ○ 포유류 ○ 육상곤충류 ○ 조류	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2
	육수 ○ 담수어류 ○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	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2

주) 조사지점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제 4 장 대안의 설정

### 4.1 대안의 검토

#### 4.1.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
-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,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(2016.12, 환경부)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6-131호) [별표2]에 제시된 “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”을 참조하였음
- 본 계획은 R&D·기업지원 인프라와 연계한 탄소소재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경쟁력(산업경쟁력) 및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을 위한계획으로 계획비교, 수요·공급, 입지, 시기·순서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·평가를 제시하였음

<표 4.1-1>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
대안 종류	선정방법	사업지구
계획 비교	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	계획수립 여부
수단·방법	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	-
수요·공급	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개발시 수요·공급 비교
입 지	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	대상지역 비교
시기·순서	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사업계획 수립시기 비교
기 타	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	-

자료 :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제2016-131호(2016. 7. 8)

## 4.2 대안별 검토

### 4.2.1 계획비교

- 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계획 미수립 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

<표 4.2-1> 계획비교

구 분	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Action)	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
토지 이용 측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개별입지로 인한 환경악화 등 난개발을 방지하여 친환경적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</li> <li>○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R&amp;D인프라 확보, 관련기업 집적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의 현황을 유지함으로써 무분별한 토지이용시 효율성 저하 또는 토지이용계획 상의 변화 없음</li> </ul>
보호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종 환경관련 보호구역에 저촉하지 않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</li> </ul>
생태계 훼손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지구 전체가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임</li> <li>○ 사업계획에 정온시설 인근으로 녹지 및 저류지를 조성하여 자연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부분 경지정리지역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나,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생태계 훼손 가능성 높음</li> </ul>
지형 훼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 시 토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형변화 발생</li> <li>○ 계획지구는 대부분 평탄지 및 완경사지(경사도 5°이하가 97.0%)에 해당하여 지형적조건의 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</li> </ul>
생활환경 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산업 기능확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</li> </ul>
자연 경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시행 시 건축물 입지로 인한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을 시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</li> </ul>
환경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생활환경(대기질, 수질, 소음 등)의 오염이 예상됨</li> <li>○ 오염원별 저감대책 강구·시행시 환경기준의 유지·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</li> </ul>
선정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효율을 증대시키며 지역성장 거점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사업을 시행(Action)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	
선 정	●	

### 4.2.2 수요공급

<표 4.2-2> 수요공급 비교

구 분	대안 1안	대안 2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 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를 위한 단독주택지 반영</li> <li>- 산업시설용지와 공원, 녹지, 공공공지 등으로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정온시설 보호</li> <li>- 이주자 택지 주변으로는 공해성 업종 이격 (화학, 고무, 금속가공 제조업 등)</li> <li>- 공동주택 입지 배제로 악취 및 소음진동 등의 환경민원 발생 감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주근접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용지 계획</li> <li>-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악취 및 소음진동 등의 환경민원 발생 증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시설용지 수요 재조사 결과 895,758㎡로 조사되었으며 수요대비 49.8%인 446,086㎡로 계획하여 2안 대비 안정적인 분양 및 운영 예상</li> <li>- 2안에 대비 18.6천㎡ 감소되어 오염물질 총 발생량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시설용지 수요조사 결과 565,834㎡로 조사되어 수요 대비 92.7%인 524,781㎡로 계획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주 기본계획 상 탄소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, 생산시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 사업대상지 지역을 공업용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</li> <li>-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의 공급으로 정합성 확보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토지 이용 계획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면적(㎡)</th> <th>구성비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 계</td> <td>655,993</td> <td>100.0</td> </tr> <tr> <td>산업시설용지</td> <td>446,086</td> <td>68.0</td> </tr> <tr> <td>주택용지(단독)</td> <td>12,272</td> <td>1.9</td> </tr> <tr> <td>상업시설용지</td> <td>15,862</td> <td>2.4</td> </tr> <tr> <td>지원시설용지</td> <td>2,384</td> <td>0.4</td> </tr> <tr> <td>공공시설용지</td> <td>179,389</td> <td>27.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합 계	655,993	100.0	산업시설용지	446,086	68.0	주택용지(단독)	12,272	1.9	상업시설용지	15,862	2.4	지원시설용지	2,384	0.4	공공시설용지	179,389	27.3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면적(㎡)</th> <th>구성비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 계</td> <td>842,505</td> <td>100.0</td> </tr> <tr> <td>산업시설용지</td> <td>524,781</td> <td>62.3</td> </tr> <tr> <td>주택용지(공동)</td> <td>53,217</td> <td>6.3</td> </tr> <tr> <td>상업시설용지</td> <td>20,548</td> <td>2.4</td> </tr> <tr> <td>지원시설용지</td> <td>12,512</td> <td>1.5</td> </tr> <tr> <td>공공시설용지</td> <td>231,447</td> <td>27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합 계	842,505	100.0	산업시설용지	524,781	62.3	주택용지(공동)	53,217	6.3	상업시설용지	20,548	2.4	지원시설용지	12,512	1.5	공공시설용지	231,447	27.5
	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 계	655,993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산업시설용지	446,086	68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택용지(단독)	12,272	1.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상업시설용지	15,862	2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원시설용지	2,384	0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시설용지	179,389	27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842,505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업시설용지	524,781	62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용지(공동)	53,217	6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업시설용지	20,548	2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시설용지	12,512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시설용지	231,447	27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정안	●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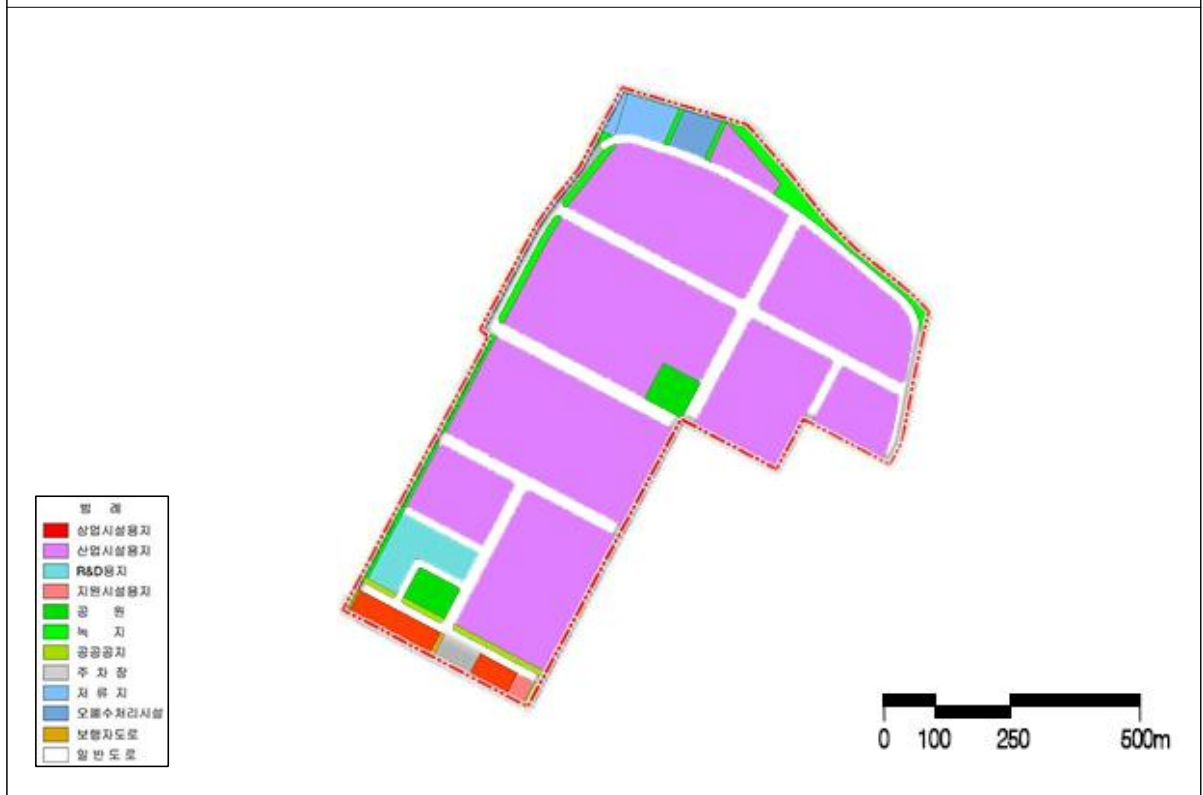
4.2.3 입지

<표 4.2-3> 입지 비교

구 분	대안 1안			대안 2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면 적	655,993㎡			638,485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 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주친환경복합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와의 클러스터화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거점의 신성장 동력확보가 가능함</li> <li>○ 기존 농수로 보전으로 농업용수 및 우수 배제에 지장 최소화</li> <li>○ 전북여고변 우회 농수로변까지 경계를 조정하여 완충공간 및 저류지 등을 계획하고 우·오수 배제 용이</li> <li>○ 동측 진입도로 개설구간내 기존 가옥의 이주주택지 조성으로 산업+주거 기능 융·복합화 유리</li> </ul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농수로 일부구간 선형 조정 및 BOX 매설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우수 배제 불리</li> <li>○ 산업단지 북측 우회농수로간 이격으로 우수 배제 불리</li> <li>○ 산업시설용지 위주의 계획으로 야간 인구 공동화 현상 발생 예상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토지 이용 계획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면적(㎡)</th> <th>구성비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 계</td> <td>655,993</td> <td>100.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산업시설 용지</td> <td>소계</td> <td>446,086</td> <td>68.0</td> </tr> <tr> <td>산업용지</td> <td>437,522</td> <td>66.7</td> </tr> <tr> <td>R&amp;D</td> <td>8,564</td> <td>1.3</td> </tr> <tr> <td>주택용지</td> <td>단독주택용지</td> <td>12,272</td> <td>1.9</td> </tr> <tr> <td>상업시설용지</td> <td>15,862</td> <td>2.4</td> </tr> <tr> <td>지원시설용지</td> <td>2,384</td> <td>0.4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10">공공시설 용지</td> <td>소계</td> <td>179,389</td> <td>27.3</td> </tr> <tr> <td>일반도로</td> <td>104,164</td> <td>15.9</td> </tr> <tr> <td>보행자도로</td> <td>2,337</td> <td>0.3</td> </tr> <tr> <td>공 원</td> <td>18,211</td> <td>2.8</td> </tr> <tr> <td>완충녹지</td> <td>21,595</td> <td>3.3</td> </tr> <tr> <td>공공공지</td> <td>4,575</td> <td>0.7</td> </tr> <tr> <td>주차장</td> <td>700</td> <td>0.1</td> </tr> <tr> <td>저류지</td> <td>6,477</td> <td>1.0</td> </tr> <tr> <td>완충저류지</td> <td>3,940</td> <td>0.6</td> </tr> <tr> <td>오폐수처리 시설</td> <td>9,015</td> <td>1.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합 계	655,993	100.0	산업시설 용지	소계	446,086	68.0	산업용지	437,522	66.7	R&D	8,564	1.3	주택용지	단독주택용지	12,272	1.9	상업시설용지	15,862	2.4	지원시설용지	2,384	0.4	공공시설 용지	소계	179,389	27.3	일반도로	104,164	15.9	보행자도로	2,337	0.3	공 원	18,211	2.8	완충녹지	21,595	3.3	공공공지	4,575	0.7	주차장	700	0.1	저류지	6,477	1.0	완충저류지	3,940	0.6	오폐수처리 시설	9,015	1.4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면적(㎡)</th> <th>구성비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 계</td> <td>638,485</td> <td>100.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산업시설 용지</td> <td>소계</td> <td>464,690</td> <td>72.8</td> </tr> <tr> <td>산업용지</td> <td>448,178</td> <td>70.2</td> </tr> <tr> <td>R&amp;D</td> <td>16,512</td> <td>2.6</td> </tr> <tr> <td>상업시설용지</td> <td>12,930</td> <td>2.0</td> </tr> <tr> <td>지원시설용지</td> <td>1,874</td> <td>0.3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10">공공시설 용지</td> <td>소계</td> <td>158,991</td> <td>24.9</td> </tr> <tr> <td>일반도로</td> <td>87,484</td> <td>13.7</td> </tr> <tr> <td>보행자도로</td> <td>499</td> <td>0.1</td> </tr> <tr> <td>공 원</td> <td>12,810</td> <td>2.0</td> </tr> <tr> <td>완충녹지</td> <td>33,004</td> <td>5.2</td> </tr> <tr> <td>공공공지</td> <td>5,563</td> <td>0.9</td> </tr> <tr> <td>주차장</td> <td>3,865</td> <td>0.6</td> </tr> <tr> <td>저류지</td> <td>7,740</td> <td>1.2</td> </tr> <tr> <td>완충저류지</td> <td>2,078</td> <td>0.3</td> </tr> <tr> <td>오폐수처리 시설</td> <td>5,948</td> <td>0.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합 계	638,485	100.0	산업시설 용지	소계	464,690	72.8	산업용지	448,178	70.2	R&D	16,512	2.6	상업시설용지	12,930	2.0	지원시설용지	1,874	0.3	공공시설 용지	소계	158,991	24.9	일반도로	87,484	13.7	보행자도로	499	0.1	공 원	12,810	2.0	완충녹지	33,004	5.2	공공공지	5,563	0.9	주차장	3,865	0.6	저류지	7,740	1.2	완충저류지	2,078	0.3	오폐수처리 시설	5,948	0.9
	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 계	655,993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산업시설 용지	소계	446,086	68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산업용지	437,522	66.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R&D	8,564	1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택용지	단독주택용지	12,272	1.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상업시설용지	15,862	2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원시설용지	2,384	0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공시설 용지	소계	179,389	27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일반도로	104,164	15.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보행자도로	2,337	0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공 원	18,211	2.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완충녹지	21,595	3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공공공지	4,575	0.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차장		700	0.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저류지		6,477	1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완충저류지		3,940	0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폐수처리 시설		9,015	1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638,485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업시설 용지	소계	464,690	72.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산업용지	448,178	70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R&D	16,512	2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업시설용지	12,930	2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시설용지	1,874	0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시설 용지	소계	158,991	24.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반도로	87,484	13.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보행자도로	499	0.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 원	12,810	2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완충녹지	33,004	5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공공지	5,563	0.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차장	3,865	0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저류지	7,740	1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완충저류지	2,078	0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오폐수처리 시설	5,948	0.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정안	●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대안 1안



대안 2안

(그림 4.2-1) 대안별 개발계획(안)

4.2.4 시기·순서

<표 4.2-4> 시기·순서 비교

구 분	대안 1안	대안 2안
시 기	금회 사업계획 수립	향후 사업계획 수립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주변난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효율성 증대</li> <li>○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기여</li> <li>○ 탄소산업과 전라북도 기반산업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, 고용, 부가가치 및 수출 촉진효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까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</li> </ul>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형의 변화, 대기질 및 소음·진동 등 영향 발생</li> <li>○ 산업시설 운영시 인구유입 및 유동인구에 따른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북 및 전주지역의 탄소소재 산업의 인프라 및 클러스트 구축에 영향</li> </ul>
선 정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계획 수립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효율성을 증대,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산업의 전후방 산업의 연계효과로 생산, 고용, 부가가치 및 수출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함</li> </ul>	
선 정	●	

## 제 5 장 약식평가절차 신청여부

### 5.1 약식평가절차 신청여부

#### 가. 약식평가 절차 법적근거

-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은 대상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%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

<표 5.1-1> 약식평가 절차 법적근거

환경영향평가법	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<b>제51조 (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)</b>	<b>법제64조(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)</b>
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(이하 "약식평가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.	법 제5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(이하 "약식절차"라 한다)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.	1.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
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.	2. 사업지역에 환경적·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34조에 따른 생태·자연도 1등급 권역
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나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
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.	마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바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

나.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

-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에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, 본 사업면적이 655,993㎡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인 150,000㎡의 200%를 초과하여 약식평가절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<표 5.1-2> 약식평가 절차 해당여부

약식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	금회사업 해당여부
1.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%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	○ 사업규모가 평가대상 최소규모 (150,000㎡)의 200% 미만으로 해당됨 ※ 사업규모 : 655,993㎡ / 150,000㎡ × 100 ≒ 437.3%
2. 사업지역에 환경적·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	○ 환경적·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업임
가. “자연환경보전법” 제34조에 따른 생태·자연도 1등급 권역	- 해당사항 없음
나. “습지보전법”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	- 해당사항 없음
다. “자연공원법”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	- 해당사항 없음
라. 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”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	- 해당사항 없음
마. “문화재보호법”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	- 해당사항 없음
바. 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”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	- 해당사항 없음
사. 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”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	- 해당사항 없음
아. “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”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	- 해당사항 없음
자. 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”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	- 해당사항 없음

## 제 6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

### 6.1 평가항목결정내용 의견수렴 계획

-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,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
-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간 공개

### 6.2 주민의견 수렴계획

-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
#### 가. 환경영향평가서 공고

-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,
-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전주시의 홈페이지,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할 계획임

#### 나. 환경영향평가서 공람

- 전주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- 또한 전주시청, 동산동주민센터 등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(세부 공람장소는 추후 협의)

#### 다.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

-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 중 1회(공람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, 설명회 개최공고 7일 후) 실시할 계획임
- 설명회 장소는 추후 전주시와 협의후 결정할 계획이며,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할 계획임

### 6.3 관계기관 의견 수렴계획

-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  - 협의기관의 장(환경부 장관), 승인기관의 장(국토교통부 장관), 관계 행정기관의 장(새만금지방환경청장, 대상지역 관할의 장(전라북도지사, 전주시장)) 등의 의견수렴 예정

## 제 7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

### 7.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

- 본 사업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한 전략환경영향평가(개발기본계획) 대상사업에 해당되나, 본 사업의 추진 근거법인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23조(「환경영향평가법」 등의 적용 특례)제1항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

<표 7.1-1>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원문

#### 제23조(「환경영향평가법」 등의 적용 특례)

- ① 「환경영향평가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21., 2011.8.4.>
  1.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
  2.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
- ②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7.21.>
- ③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를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7.21., 2011.8.4.>
- ④ 지정권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21., 2011.8.4.>



## 제 8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

### 8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

- 근거법령 :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, 같은법 시행령 제32~33조
- 주관 행정기관 : 국토교통부
-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: 총 10인
  - 승인기관(2인), 환경부(2인), 전문가(3인), 관련부서(1인), 주민대표(1인), 시민단체(1인)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- 심의기간 : 2017년 10월 23일
- 결정사항 :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, 환경보전방안의 대안,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